보험금 청구서

KYOBO 교보생명

개정일 : 2020. 10. 16

1. 인적사항

피보험자	성명		주민번호		휴대폰		E-mail	
	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	☐ 예 ☐ 아니오	* 의료수급권자 해당 시 2014. 4월 이후 가입 또는 갱신된 표준화 실손보험 할인 가능					
수익자	성명		주민번호		휴대폰		E-mail	
	주소							

2. 청구 세부내용

※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.(세부항목 상세 체크기재 시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)

청구내용	☐ 실손의료비 ☐ 입원 ☐ 통원 ☐ 수술 ☐ 진단 ☐ 장해 ☐ 사망 ☐ 기타	
사고내용	☐ 질병 ☐ 재해 ☐ 자살 ☐ 기타 • 질병 : 신체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• 재해 : 급격·우연한 외부사고로 다친 경우 ※ 개별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약관 참조	자동차보험 / 산재보험 처리여부 ☐ 예 ☐ 아니오
	• 사고일시 : 년 월 일 시 분 • 사고장소 : • 사고경위(질병은 증상 및 치료내용)	
추가내용	• 실손의료비 또는 통원비(정액보험금) 청구 시 (합산청구금액 10만원 이하)	병명 :
미청구 보험금	(피보험자 기준) 교보생명은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. 금번 청구내역 이외 다른 질병/재해사고로 병원방문 사실(청구권 소멸시효 이내 건)이 있습니까?	☐ 예 ☐ 아니오

3. 보험금 수령 및 제 안내

입금받으실 계좌	은행명 : 계좌번호 : 예금주 :	
사고보험금 (분할보험금 포함) 수령안내	사고보험금 및 분할보험금은 신청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. ·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는 분할보험금 중 확정 지급형은 해당 지급기일 도래 시, 생존조건 지급형은 매 지급기일에 피보험자 생존이 확인(생존확인서류 제출 또는 신분증 확인 등)된 경우 송금하여 드립니다. · 확정 지급형에 대한 일시금 신청 시 약관에 정해진 이율을 적용한 할인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.	일시금 신청 ☐
심사관련 안내방법 (심사지연,지급내역)	☐ 문자(알림톡) ☐ E-mail ☐ 우편 ☐ 전화안내 ☐ 미신청 ※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지연,지급내역 이외 심사과정 안내는 문자(알림톡)으로, 심사결과 보험금 감액·부지급 시 안내는 우편으로 안내드립니다. ※ 피보험자 민감정보는 본인에 한해 제공합니다.(피보험자의 별도 신청서 제출 시 계약관계자 제공 가능)	

4. 보험금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

보험업법 제 95조의 2 제3항, 제4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담당부서/연락처, 예상 지급기일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아래 설명을 듣고 별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. ①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(단,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영업일 이내)에 심사를 완료/지급하여 드리며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별도로 설명드리고 소정의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② 보험금 수익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약관 및 민법에 따라 해당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 ③ 보험금 지급심사 등 일부 업무는 KCA손해사정㈜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	확인 ☐

※ 보험사기(허위입원,고의사고,피해과장 등)는 범죄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보험가입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단체명

단체 계약자가 청구 시 작성(명판,거래인감 날인)

명 판

거래 인감

단체 계약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안내
- 사망 또는 장해1급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 시 : 단체보험금 청구 수령안내 확인서
- 사업자 등록증 사본(등록인감 원본대조필)
- 담당직원(대리인)서류 접수 시 실명증표 + 명참(또는 재직증명서)

수익자 (청구자)	성 명	서명(인)	

[청구자 정보] ※ 수익자 본인이 아닌 경우 기재(대리인 청구 시 위임서류 추가 필요)

주민번호		피보험자와의 관계	
휴대폰 / E-mail	휴대폰 / E-mail		

대리접수FP	성명		사번		지점명		휴대폰	

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I

KYOBO 교보생명

개정일 : 2020. 10. 16

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· 이용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?

동의함 ☐

●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보험금 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
- 금융거래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, 자동이체 등 접수) 관련 업무

●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등), 계좌정보, 당사 및 타보험사(우체국보험, 공제사업자 포함)의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(사고정보 포함)
-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 (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

●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
 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·이용하며 별도 보관)

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생명 · 손해보험협회,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?

동의함 ☐

●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 목적

- 보험금 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
●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
-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

● 조회 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(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
 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·이용하며 별도 보관)

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II

KYOBO 교보생명

개정일 : 2020. 10. 16

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☐

●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
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해양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, 경찰청, 검찰청, 법원 등 국가기관
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 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, 생명·손해보험협회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[KCA손해사정㈜, 청구권자 선임 손해사정사, 의료기관·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터, 전산회사, 교보생명 컨설턴트·보험대리점, 고객안내 발송 대행업체]

※ 상기 업무수탁자는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

●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(위탁업무 포함), 보험사기 수사·재판 등
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, 소견서, 진료기록열람,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,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 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업무, 고객 안내자료 제작 및 발송관련 업무

●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 ※ 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

●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 기간
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 종료 후 5년까지)

※ 각 제공 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(www.kyobo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기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(질병 · 상해정보) 및 고유식별 정보(주민등록번호 · 외국인등록번호)를 처리(수집 · 이용, 조회, 제공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동의하십니까?

질병 · 상해 정보 처리	동의함 ☐
주민등록번호 · 외국인등록번호 처리	동의함 ☐

20 년 월 일

피보험자	성명 :	서명(인) :	친권자 (후견인)	성명 :	서명(인) :
수 익 자	성명 :	서명(인) :		성명 :	서명(인) :

※ 거래종료는 1) 보험계약의 만기·해지·취소·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)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, 3) 채권·채무관계 소멸일 등 당사와의 모든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다만,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 하더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,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, 보험금 지급이나 수사·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구비서류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
<tr><td>공통</td><td>보험금청구서(수익자 계좌번호 기재),
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청구인 신분증(내방시)
※ 신분증종류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</td><td>(필요시)추가서류
미성년자 또는 종피보험자 : 가족관계확인서류(배우자·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 예)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등
대리인 청구시 : 위임장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재해사고시 : 1. 교통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·손해보험사·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2. 산업재해 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
3. 군인재해사고 : 공무상병인증서
4.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: 법원판결문
5. 기타 재해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6. 확인서류발급불가시 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</td></tr>
<tr><td>사망</td><td>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
※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기본증명서(사망사실기재) 원본 첨부필수
※ 기본증명서이외 서류 : 호적·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사실기재) 등</td><td>(사망시 수익자 미지정시)추가서류
상속관계 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증명서(상세) 등
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: 위임한 상속인 각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사망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: 위임한 친권자(후견인)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(특정)기본증명서(미성년자기준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/td></tr>
<tr><td>장해</td><td>후유장해진단서
※ 팔, 다리관절, 척추장해는 AMA 방식의 운동각도 기재 ('18.4월이후 산재보상법)
※ 가입한 계약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</td><td>일반진단서로 청구 가능한 장해
만성신부전 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(영구투석)기재
사지절단 : 수술명(절단부위), 수술일자, 현재상태(접합여부), X-ray 필름첨부
인공관절치환술 : 수술명(부위), 수술일자 기재
비장/신장/안구 적출 :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
심장/신장/간장/폐장 이식 :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</td></tr>
<tr><td>진단</td><td>진단서, 진단사실 확인서류</td><td>진단사실 확인서류
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 : 조직검사결과지
백혈병 등 혈액암 : 골수검사결과지
간암/췌장암/폐암/뇌암 : 방사선판독결과지(조직검사 못할 경우)
뇌졸중 : 방사선판독결과지(CT, MRI 등)
급성심근경색증 : 심장효소검사결과지(CK-MB 등). 심전도검사결과지,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초음파결과지 등
당뇨병 : 당화혈색소(HbA1C) 검사결과지</td></tr>
<tr><td>입원</td><td>진단서, 입퇴원확인서</td><td>진단서상 입퇴원일자 기재시 입퇴원확인서 생략가능 /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(질병코드) 기재시 진단서 생략가능</td></tr>
<tr><td>통원</td><td>진단서·통원확인서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처방전 中 택일</td><td>질병코드별 통원일자 기재 필수</td></tr>
<tr><td>응급실 내원</td><td>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진료비세부내역서</td><td>진료비계산서상 응급의학관리료 구분 가능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가능</td></tr>
<tr><td>수술</td><td>진단서, 수술확인서</td><td>진단서상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시 수술확인서 생략가능</td></tr>
<tr><td>골절</td><td>진단서·통원확인서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처방전 中 택일</td><td>진단명(질병코드) 기재 필수</td></tr>
<tr><td>치아 치료</td><td>치아치료확인서 또는 치과치료진단서(소견서), 치과진료기록사본</td><td>치아번호, 치아치료종류, 치아진단확정일 및 치료종료일 기재 필수(치과진료기록사본 유첨 필수)</td></tr>
<tr><td>태아 보험</td><td>[신생아입원비]
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
[유산/사산]
- 진단서(유산) / 사산증명서(사산)</td><td>자녀등재 후 보험금 청구
※ 자녀 등재 서류
- 친권자 신청 :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에 대한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- 친권자外 신청 : 상기 서류 外 친권인(부모 등)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수임자와 친권인의 관계확인서류
※ 별도 친권자 지정시 : (특정)기본증명서(자녀기준) 추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실손</td><td>입원</td><td>진단서,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진료비세부내역서</td><td rowspan="3">서류 간소화 청구대상
입원 통원 : 합산 10만원 이하 : 진단병명 확인 서류(진단서, 통원확인서 등) 생략가능
※ 다음의 경우 진단병명 확인서류 제출 - 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치료시 / 치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/ 반복 청구하는 경우
통원 : 17.4.1. 이전 계약 :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가능
※ 다음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- 비급여 5만원 이상 청구시 / 타사 실손계약 17.4.1. 이후 가입자</td></tr>
<tr><td>통원</td><td>진단서·통원확인서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처방전 中 택일,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,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</td></tr>
<tr><td>처방</td><td>처방전(질병코드기재), 일자별 수납내역(약국 영수증)</td></tr>
</table>

※ 공통서류와 각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,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사고내용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의료기관 발급서류는 환자 인적사항, 병명(질병코드), 치료내역, 직인 날인 등이 정확히 기재된 원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(모바일/홈페이지 접수 시 300만원 이하, FAX접수 시 100만원 이하는 사본 제출 가능)
※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(신분증 사본, 위임장, 동의서, 인감 등)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※ 피보험자 민감정보의 계약관계자 제공 신청(고객PLAZA 내방) - 신청 서류 : 피보험자 신분증, 신청서(대리 신청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추가)
※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류는 영어(또는 중국어, 일본어)로 발급받으시면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합니다.
■ 자세한 내용은 교보생명 홈페이지(www.kyobo.co.kr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사 콜센터 사고보험금 전용상담센터(1588-1810)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보험상담 및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

☎ 콜센터(지역번호 없이) 1588-1810 • 평일 09:00~18:00
전국 고객PLAZA • 평일 09:00~15:50
※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콜센터 및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KYOBO 교보생명